|  |  |  |
| --- | --- | --- |
| **종합 보세구에서의 증치세 일반 납세인 자격**  **시범 추진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9년 제29호  <국무원의 종합 보세구의 수준 높은 개방, 질 높은 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관한 약간의 의견>(국발 [2019] 3호)에 근거하여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해관총서에서는 종합 보세구에서 증치세 일반 납세인 자격 시범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유관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종합 보세구 증치세 일반 납세인 자격 시범(이하 “일반 납세인 자격 시범”이라 약칭)은 비안 관리를 실행한다.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는 종합 보세구는 그의 소재지 성급 세무, 재정부문과 직속 해관에서 일반 납세인 자격 시범 실시방안(종합 보세구 명칭, 기업 신청 수요, 정책 실시 준비 조건 등 상황을 포함)을 국가세무총국, 재정부와 해관총서에 비안한 후, 일반 납세인 자격 시범을 전개할 수 있다.  1.1 종합 보세구내 기업이 확실히 일반 납세인 자격 시범을 전개할 수요가 있는 경우  1.2 소재지 시(지)급 인민 정부가 앞장서서 종합 보세구 행정 관리기구, 세무, 해관 등 부문에서 협력하여 시범을 추진하는 업무 체제를 수립한 경우  1.3 종합 보세구 주관 세무기관과 해관에서 일반 납세인 자격 시범 업무 관련 연합 감독관리와 정보 공유 체제를 수립한 경우  1.4 종합 보세구 주관 세무기관은 종합 보세구에서 업무를 전개할 조건을 구비하고 전문 기구 또는 인원을 확정하여 납세 서비스, 세수 징수관리 등 관련 업무를 책임지도록 한다.  2. 종합 보세구는 비안 완료 후, 구내의 증치세 일반 납세인 등기 관리 유관 규정에 부합되는 기업은 자발적으로 종합 보세구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 해관에 시범 기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규정에 따라 주관 세무기관에서 증치세 일반 납세인 자격 등기를 진행한다.  3. 시범 기업은 증치세 일반 납세인 자격 효력 발생일부터 아래의 세수 정책을 적용한다.  3.1 시범 기업이 자가용 설비(기계설비, 인프라 구축 물자와 사무 용품 포함)를 수입할 시, 수입 관세와 수입 부분 증치세, 소비세(이하 “수입 세수”라 약칭)를 일시적으로 면제한다.  상술한 수입 세수의 일시적인 면제는 해당 수입 자가용 설비의 해관 감독관리 연한에 따라 균등하게 각 연도에 배분되고, 매년 연말에 일시적으로 면제받은 당해 연도의 수입 세수에 대하여 당해 국내외 판매 비율에 따라 구분하며, 해외 판매 비율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 기업 소재 해관 특수 감독관리 구역의 세수정책을 집행하고, 국내 판매 비율 부분에 대해서는 해관 특수 감독 관리 구역 외(이하 “구역 외”라 약칭) 세수 정책에 따라 세금을 보충 징수한다.  3.2 수입한 자가용 설비 외, 구입하는 아래의 화물은 보세 정책을 적용한다.  3.2.1 경외로부터 구입하여 시범 구역에 진입한 화물  3.2.2 해관 특수 감독 관리 구역(시범 구역 제외) 또는 해관 보세 감독 관리 장소로부터 구입하여 시범 구역에 진입한 보세 화물  3.2.3 시범 구역내에서 비 시범 기업으로부터 구입한 보세 화물  3.2.4 시범 구역내의 기타 시범 기업으로부터 구입한 가공을 거치지 않은 보세 화물  3.3 아래의 화물을 판매할 경우, 주관 세무기관에 증치세, 소비세를 신고, 납부한다.  3.3.1 경내 구역 외에 판매한 화물  3.3.2 보세구, 환급 기능을 구비하지 않은 보세 감독 관리 장소에 판매한 화물(가공을 거치지 않은 보세 화물 제외)  3.3.3 시범 구역내의 기타 시범 기업에 판매한 화물(가공을 거치지 않은 보세 화물 제외)  시범 기업이 판매한 상술된 화물 중에 보세 화물이 포함될 경우, 보세 화물이 해관 특수 감독 관리 구역에 진입했을 시의 상태에 따라 해관에 수입 세수를 신고, 납부하며, 규정에 따라 세금 완납 이자를 보충 납부한다.  3.4 해관 특수 감독 관리 구역 또는 해관 보세 감독 관리 장소에 가공을 거치지 않은 보세 화물을 판매할 경우 계속하여 보세 정책을 적용한다.  3.5 아래의 화물(가공을 거치지 않은 보세 화물 제외)을 판매할 경우, 수출 환급(면제) 세수 정책을 적용하고, 주관 세무기관은 해관에서 제공한 그에 대응하는 수출 화물 신고서 전자 데이터에 근거하여 시범 기업에서 신고한 수출 환급(면제) 세수를 심사 처리한다.  3.5.1 출국 수출하는 화물  3.5.2 해관 특수 감독 관리 구역(시범 구역, 보세구 제외) 또는 해관 보세 감독 관리 장소(환급 기능이 구비되지 않은 보세 감독 관리 장소 제외)에 판매하는 화물  3.5.3 시범 구역내 비 시범 기업에 판매하는 화물  3.6 가공을 거치지 않은 보세 화물이 수출 시 증치세, 소비세 면세 정책을 실행한다.  3.7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의 별도의 규정 외, 시범 기업은 구역 외의 관세, 증치세, 소비세의 법률, 법규 등 현행 규정을 적용한다.    4. 구역 외에서 시범 기업에 판매하는 가공 무역 화물은 계속하여 현행 세수 정책을 집행하고, 시범 기업에 판매하는 기타 화물(물, 증기, 전력, 가스를 포함)은 더 이상 수출 환급 정책을 적용하지 아니 하며, 규정에 따라 증치세, 소비세를 납부한다.  5. 세무, 해관 두 부문에서는 세수 징수 관리와 화물 감독관리 정보 교환을 강화해야 한다. 수출 환급 정책을 적용하는 화물에 대해 해관은 세무부문에 수출신고서 통관 정보 전자 데이터를 전송한다.  6. 본 공고는 발표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해관총서의 해관 특수 감독관리 구역 기업 증치세 일반 납세인 자격 부여 시범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재정부, 해관총서 2016년 제65호 공고),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해관총서의 해관 특수감독관리 구역 기업 증치세 일반 납세인 자격 확대 부여 시범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재정부, 해관총서 2018년 제5호 공고)와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해관총서의 해관 특수 감독관리 구역 기업 증치세 일반 납세인 자격 진일보 확대 부여 시범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재정부, 해관총서 2019년 제6호 공고)는 동시에 폐지한다. 상술한 공고에 열거한 곤산 종합 보세구 등 48개의 해관 특수 감독관리 구역은 본 공고에 근거하여 계속하여 일반 납세인 자격 시범을 전개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해관총서  2019년 8월 8일 |  | **关于在综合保税区推广增值税一般纳税人**  **资格试点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9年第29号  根据《国务院关于促进综合保税区高水平开放高质量发展的若干意见》（国发〔2019〕3号），国家税务总局、财政部、海关总署决定在综合保税区推广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试点，现就有关事项公告如下：  　　一、综合保税区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试点（以下简称“一般纳税人资格试点”）实行备案管理。符合下列条件的综合保税区，由所在地省级税务、财政部门和直属海关将一般纳税人资格试点实施方案（包括综合保税区名称、企业申请需求、政策实施准备条件等情况）向国家税务总局、财政部和海关总署备案后，可以开展一般纳税人资格试点：  　　（一）综合保税区内企业确有开展一般纳税人资格试点的需求；  （二）所在地市（地）级人民政府牵头建立了综合保税区行政管理机构、税务、海关等部门协同推进试点的工作机制；  （三）综合保税区主管税务机关和海关建立了一般纳税人资格试点工作相关的联合监管和信息共享机制；  （四）综合保税区主管税务机关具备在综合保税区开展工作的条件，明确专门机构或人员负责纳税服务、税收征管等相关工作。  二、综合保税区完成备案后，区内符合增值税一般纳税人登记管理有关规定的企业，可自愿向综合保税区所在地主管税务机关、海关申请成为试点企业，并按规定向主管税务机关办理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登记。  三、试点企业自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生效之日起，适用下列税收政策：  　　（一）试点企业进口自用设备（包括机器设备、基建物资和办公用品）时，暂免征收进口关税和进口环节增值税、消费税（以下简称进口税收）。  上述暂免进口税收按照该进口自用设备海关监管年限平均分摊到各个年度，每年年终对本年暂免的进口税收按照当年内外销比例进行划分，对外销比例部分执行试点企业所在海关特殊监管区域的税收政策，对内销比例部分比照执行海关特殊监管区域外（以下简称区外）税收政策补征税款。  （二）除进口自用设备外，购买的下列货物适用保税政策：  　　1.从境外购买并进入试点区域的货物；  2.从海关特殊监管区域（试点区域除外）或海关保税监管场所购买并进入试点区域的保税货物；  　　3.从试点区域内非试点企业购买的保税货物；  4.从试点区域内其他试点企业购买的未经加工的保税货物。  （三）销售的下列货物，向主管税务机关申报缴纳增值税、消费税：  　　1.向境内区外销售的货物；  2.向保税区、不具备退税功能的保税监管场所销售的货物（未经加工的保税货物除外）；  3.向试点区域内其他试点企业销售的货物（未经加工的保税货物除外）。  试点企业销售上述货物中含有保税货物的，按照保税货物进入海关特殊监管区域时的状态向海关申报缴纳进口税收，并按照规定补缴缓税利息。  （四）向海关特殊监管区域或者海关保税监管场所销售的未经加工的保税货物，继续适用保税政策。  （五）销售的下列货物（未经加工的保税货物除外），适用出口退（免）税政策，主管税务机关凭海关提供的与之对应的出口货物报关单电子数据审核办理试点企业申报的出口退（免）税。  　　1.离境出口的货物；  2.向海关特殊监管区域（试点区域、保税区除外）或海关保税监管场所（不具备退税功能的保税监管场所除外）销售的货物；  3.向试点区域内非试点企业销售的货物。  （六）未经加工的保税货物离境出口实行增值税、消费税免税政策。  （七）除财政部、海关总署、国家税务总局另有规定外，试点企业适用区外关税、增值税、消费税的法律、法规等现行规定。  四、区外销售给试点企业的加工贸易货物，继续按现行税收政策执行;销售给试点企业的其他货物（包括水、蒸汽、电力、燃气）不再适用出口退税政策，按照规定缴纳增值税、消费税。  五、税务、海关两部门要加强税收征管和货物监管的信息交换。对适用出口退税政策的货物，海关向税务部门传输出口报关单结关信息电子数据。  六、本公告自发布之日起施行。《国家税务总局 财政部 海关总署关于开展赋予海关特殊监管区域企业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试点的公告》（国家税务总局 财政部 海关总署公告 2016年第65号）、《国家税务总局 财政部 海关总署关于扩大赋予海关特殊监管区域企业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试点的公告》（国家税务总局 财政部 海关总署公告 2018年第5号）和《国家税务总局 财政部 海关总署关于进一步扩大赋予海关特殊监管区域企业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试点的公告》（国家税务总局 财政部 海关总署公告 2019年第6号）同时废止。上述公告列名的昆山综合保税区等48个海关特殊监管区域按照本公告继续开展一般纳税人资格试点。  　　特此公告。  国家税务总局  财政部  海关总署  2019年8月8日 |